

# 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25. 4.

제 출 자 : 하남시장(교통  
정책과)

## 1. 제안이유

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을 「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,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 구성(안 제10조제1항 및 제3항)
- 나. 「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「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  
(안 제10조제5항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하남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 ‘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’가 심의 또는 의결할 사항에 대하여,

「하남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 
따른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심의·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  
는 것으로,

-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 
사료됨.